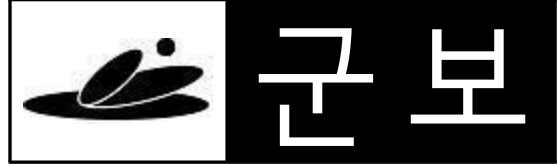


#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94호 2023. 4. 10.(월)

## 조 례

- 예산군 조례 제2814호 :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예산군 조례 제2815호 :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예산군 조례 제2816호 : 지속가능 기본 조례 ..... 15
- 예산군 조례 제2817호 :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 예산군 조례 제2818호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 29
- 예산군 조례 제2819호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32
- 예산군 조례 제2820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5
- 예산군 조례 제2821호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 ..... 53
- 예산군 조례 제2822호 :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 예산군 조례 제2823호 : 예산군 싱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94호 : 예산군 관광택시 요금 고시 ..... 67

##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666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 69
- 예산군 공고 제2023-667호 :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 77

회 람									
--------	--	--	--	--	--	--	--	--	--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4호

###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과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실·과”를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물품의”를 “물품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4개월, 9개월)이상”을  
“(4월, 9월)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제4항 각호에 따른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료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물품관리카드등록부

7. 도서대장

제29조제1항 중 “청·소”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50만원)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 소모품 - ①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②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08.01)  
③ 기타 군수가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 조립, 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한다(예:휴대전화기 등)

####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군수는 물품 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u>물품출납원</u>“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u>공유재산 과 물품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u>실·과</u>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u>제2항</u>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u>물품출납원</u>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물품출납원</u>” “&lt;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gt;이 -----.</p> <p>③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 <u>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u>-----.</p> <p>④ <u>제2항 및 제3항</u>----- <u>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u>-----.</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u>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채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需給) 관리 계획에 반영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 ----- ----- ----- -----.</p>

② (생략)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과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보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년 2회 (4개월, 9개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과 인수증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  
----- 물품은 -----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제4항 각호에 따른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4월, 9월) 이상 -----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나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6. 물품관리카드등록부

7. 도서대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  
-----  
-----  
-----  
-----  
-----  
-----  
----- 직속기관·사업소·읍·면 -----  
--.

② (현행과 같음)

## 1. 제안이유

- 예산군 물품의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분임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대한 규정 추가(안 제2조)
- 나. 별표 1의 소모품 기준 조정(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 규정, 10만 원 이하→50만 원 미만)
- 다.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문구수정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5호

##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 경로당
- 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제4조 관련)

신청인	① 세대주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택구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⑤ 현 주소	(전화 : )		
⑥ 설치장소				
⑦ 사업기간		⑧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등 여부 (제5조제2항)	여 · 부	

위와 같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급에 필요한 시설 총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li> <li>6. 경로당</li> <li>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li> </ol>

② (생 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 1. 제안이유

-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함에 있어, 설치비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설치비의 전액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6호

###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

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예산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 의뢰)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 및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국내외 협력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제3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제3항”으로 한다.

##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다.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 제4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 5년마다 수립·이행,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

라.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6조, 제7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후 지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2년마다 지속가능성 점검하고 평가
- 위원회에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14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 구성인원 : 20명 이내(위원장 부군수), 임기 2년

2)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3)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 시민사회단체 · 학계 ·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시

3) 회의사항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 위촉직 위원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7호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u>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u></p> <p>2. <u>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6조(적극행정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p> <p>-----.</p> <p>1. <u>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p> <p>2. <u>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u></p> <p>3. <u>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u></p> <p>4. <u>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u></p> <p>5. <u>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p> <p><u>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u></p>

현행	개정안
	<p>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u></p> <p>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 '22. 12. 2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 개정(안 제6조 본문)

- (현행) 영 제10조제1항
-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제1호 ~ 제5호)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 추가
- 소송 등 지원 대상 범위를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8호

###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서무담당”을 “인구정책대응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p> <p>② (생략)</p>	<p>제10조(간사) ①</p> <p>-----</p> <p>-----, --- <u>인구정책대응팀장</u></p> <p>---</p> <p>② (현행과 같음)</p>

## 1. 제안이유

- 업무 이관에 따른 미정비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간사 현행화(안 제10조제1항)
  - (현행) 서무담당 ⇒ (변경) 인구정책대응팀장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19호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을 “(이하“군”이라한다)에 거주·생활하는”으로, “39세”를 “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는 ----- 45세 -----.</p> <p>2. ~ 5. (현행과 같음)</p>

##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정,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 확대
-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군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조정(안 제2조제1호)

- 변경 전: 18세 이상 39세 이하
- 변경 후: 18세 이상 45세 이하

나. 청년의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

- 변경 전: 예산군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 변경 후: 예산군에 거주·생활하는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20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설시장”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의 장소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관리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예산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예산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시설기준)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3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장소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될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할 것

제15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및 신청 자격)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사용료는 제36조에 따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장관리자의 업무)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구역과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 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이용객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5. 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화장 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 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 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 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법 제11조제1항, 법 제19조의7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한 시설물
2.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로 소유권을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경우

제30조(공제가입) ① 시장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고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변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료) 공설시장의 부지 및 시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공설시장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징수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시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사용허가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할 것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할 것
3.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나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

할 것

4.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것
5. 정기시장 사용자 및 시장의 일시사용자 사용료는 매 회당 징수할 것
6. 사용료 산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은 1제곱미터로 할 것

제3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3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동의 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

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장 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2.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3. 시설물의 위탁·지도·감독·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 행)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 (개정안)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전통시장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다. 전통시장의 인정 및 관리에 사항(안 제4조~제7조)

- 전통시장의 기준, 인정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취소 등에 관한 규정

마.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3조)

- 상인회 등록, 정관,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41조)

- 시설물 소유권,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21호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서 규정한 기본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

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단체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시설물을 임대·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설물의 취득, 설치·조성,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다.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후관리, 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22호

###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구입 비용”을 “구입, 유류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생략)</p> <p>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u>구입 비용</u> 등</p> <p>8.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구입</u>, <u>유류대</u> ----- --</p> <p>8.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1. 제안이유

- 예산군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예찰 및 응급복구 활동 시 읍면지 정착량 유지 및 활동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유류대 지원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재난관련 법정 단체 활성화 및 단원들의 재난대응 활동 추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방재단 활동 유류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2항)
  - (기존)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 비용 등
  - (변경)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 유류대 등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4월 10일

예산군 조례 제2823호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세척·수리”를 “세척·갱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척·수리”를 “세척·갱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7]

**급수설비 세척·갱생·교체비용 지원기준(제42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비율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지원비율 : 공사비의 80% - 최대 지원액 : 150만원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 지원비율 : 공사비의 80% - 최대 지원액 : 120만원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 지원비율 : 공사비의 80% - 최대 지원액 : 100만원(가구당)
4. 초·중·고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준한다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예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 ----- ----- ----- ----- ----- ----- ----- ----- ----- ----- -----.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와 제13조 및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 략)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u>세척·수리</u>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세척·갱생</u> ----- ----- . 이 경우



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수리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 세척·  
갱생 -----  
-----  
-.

1. 2. (현행과 같음)

## 1. 제안이유

- 수도시설의 관리권이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는 개인급수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을 위한 세척·갱생 등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기존) 「지방자치법」 제152조 → (변경) 「지방자치법」 제153조

나. 상위법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기존) 세척·수리 또는 교체 → (변경) 세척·갱생 또는 교체

다.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지원기준 신설안 제42호제2항 후단

- (신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고시 제2023-94호

## 예산군 관광택시 요금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예산군 관광택시 요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6.

### 예 산 군 수

1. 적용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2. 적용기간 : 고시 게재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3. 적용대상 : 사전 예약·접수에 의한 예산군 관광택시 이용자
4. 관광택시 운영 및 요금
  - 요금원칙 : 시간요금제
  - 운행요금

구 분	6시간	10시간	비고
계	10만원	16만원	
이용자 부담금	5만원	8만원	
군 지원금	5만원	8만원	

- 추가요금 : 투어일정 외 1시간당 20,000원
  - 운행구역 : 예산군 관내
  - 이용방법 : 예산군 승인 예산관광택시 관광상품 사전예약
- ※ 종합 안내 홈페이지: [https://www.yesan.go.kr/tour/sub05\\_02\\_01.do](https://www.yesan.go.kr/tour/sub05_02_01.do)

## 5. 기타사항

- 예산관광택시 종합 문의는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3-666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삼교읍(중앙로)도로(중2-22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삼교읍(중앙로)도로(중2-22호)개설공사
2. 사업구간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신가리 265번지 외 37필지
3.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12)
4. 열람기간 : 2023. 4. 10. ~ 2023. 4. 25.
5. 보상시기 : 감정 평가 후 별도 통지
6. 토지조서 : 붙임 목록과 같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

####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3인(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함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

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41-339-7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편입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신가리	265	265	493	493	도	능**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86번지	
2	신가리	265-6	265-55	102	14	대	이*우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근저당
							새마을금고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3	신가리	265-35	265-35	22	22	대	강*경	예산군 삽교읍 ***265	
4	신가리	265-36	265-36	17	17	대	강*경	예산군 삽교읍 ***265	
5	신가리	265-37	265-37	25	25	대	강*경	예산군 삽교읍 ***265	
6	신가리	265-28	265-58	596	65	대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7	신가리	265-53	265-61	739	90	대	임*자	홍성군 홍북면 ***275번길 128-**	근저당
							홍성낙농협동조합	홍성군 홍북면 홍학로 93	
	신가리	265-53	265-61	739	90	대	김*연	홍성군 홍북읍 *** 213, 111동 ****호	
8	신가리	265-48	265-48	31	31	대	이*섭	예산군 삽교읍 *** 102-1	
9	신가리	265-34	265-60	137	24	대	신*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 13, 104동 ***호	
10	신가리	265-21	265-56	264	47	대	강*숙	예산군 삽교읍 *** 100	
	신가리	265-21	265-56	264	47	대	강*석 새마을금고	예산군 삽교읍 *** 100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근저당
11	신가리	265-22	265-57	215	40	대	김*현	예산군 삽교읍 ** 238	근저당
							새마을금고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12	신가리	283-43	283-100	63	22	대	권*자	예산군 삽교읍 ** 283	
13	신가리	283-14	283-89	99	37	대	권*자	예산군 삽교읍 ** 283	근저당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14	신가리	283-17	283-90	112	45	대	한*석	예산군 삽교읍 *** 283-33	
15	신가리	283-18	283-91	96	35	대	정*영	예산군 삽교읍 **** 11, 이지더원 108동 ****호	근저당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정*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312, 2105동 ***호	
16	신가리	283-80	283-80	53	53	대	김*필	예산군 예산읍 *** 295	근저당 지상권
							덕산농업협동조합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 3	
17	신가리	283-22	283-93	56	19	대	손*미	예산군 삽교읍 *** 72, ***호	
18	신가리	283-11	283-87	225	52	대	김*겸	예산군 삽교읍 *** 72 벽산아파트 ****호	
19	신가리	283-70	283-70	75	75	대	이*용	예산군 삽교읍 *** 84-1	
20	신가리	283-24	283-94	60	10	대	정*란	예산군 삽교읍 *** 118	
21	신가리	283-25	283-95	235	40	대	김*협	수원시 권선구 *** 648 엘지빌리지아파트 105-*****	
22	신가리	283-26	283-96	145	56	대	김*철	예산군 삽교읍 *** 283	
23	신가리	283-10	283-86	393	74	대	인*환	예산군 삽교읍 **** 75-1	

24	신가리	283-7	283-85	대	139	8	이*영	예산군 삽교읍 *** 67-1		
25	신가리	283-50	283-103	대	162	26	박*숙	예산군 삽교읍 *** 76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근저당	
26	신가리	283-7	283-85	대	139	8	이*영	예산군 삽교읍 *** 67-1		
27	신가리	283-50	283-103	대	162	26	박*숙	예산군 삽교읍 *** 76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근저당	
28	신가리	283-51	283-104	대	172	29	최*숙	경기도 남양주시 **** 118-99, ***호		
29	신가리	283-60	283-106	대	377	44	김*미	예산군 삽교읍 *** 283-106		
							농협은행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1	근저당	
30	신가리	283-27	283-97	대	231	13	신*철	예산군 삽교읍 ** 803-286		
31	신가리	283-28	283-98	대	116	14	신*철	예산군 삽교읍 ** 803-286		
32	신가리	283-29	283-99	대	192	11	신*철	예산군 삽교읍 ** 803-286		
33	신가리	283-46	283-101	대	142	21	박*희	예산군 삽교읍 *** 62-1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근저당	
34	신가리	290-21	290-36	대	116	4	박*희	예산군 삽교읍 *** 62-1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근저당	
35	신가리	290-23	290-37	대	271	17	권*은	예산군 삽교읍 *** 62-1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근저당	
36	신가리	290-11	290-33	대	102	28	최*서	예산군 삽교읍 *** 62		
							최*의	예산군 예산읍 ****144번길 19, 102동 ***호		
							피엘씨대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퍼스트역삼빌딩 5층	대위자	
							권*은	예산군 삽교읍 *** 62-1		
							삽교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7-3	근저당	
37	신가리	290-20	290-35	대	188	32	최*서	예산군 삽교읍 *** 62		
							동양자산관리대부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1110호	가압류	
							피엘씨대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퍼스트역삼빌딩 5층	대위자	
							최*의	예산군 예산읍 ****144번길 19, 102동 ***호		
							피엘씨대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퍼스트역삼빌딩 5층	대위자	
							정*식	서울시 양천구 ***29길 61 107동 ****호		
38	신가리	289-1	289-37	대	689	41	유*인	고창군 무장면 ***** 8-25		
39	신가리	291-9	291-9	대	7	7	현*교	예산군 삽교읍 *** 48-8		
40	신가리	291-8	291-8	대	25	25	현*교	예산군 삽교읍 *** 48-8		



[붙임] 편입지장물 현황

연번	소재지	당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신가리	265-55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45.2	㎡	이*우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근저당
3			울타리	목재	4	M	새마을왜금고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4			간판		1	식	이*우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5			간판		1	식	최*유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6			동산이전비		1	식			
7			간판		1	식	진*미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8			목조데크		1	식			
9			동산이전비		1	식			
10			간판		1	식	홍*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14	
11			동산이전비		1	식			
12			신가리	265-35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	305.84	㎡	강*경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강*자		
13	신가리	265-35	건물	2*20	40	㎡	강*경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5	
14	신가리	265-35	비가림시설		24	㎡			
15	신가리	265-35	철제문		1	식	윤*순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5-7	
16	신가리	265-35	간판		1	식			
17	신가리	265-35	동산이전비		1	식			
18	신가리	265-35	간판		1	식			
19	신가리	265-35	동산이전비		1	식			
20	신가리	265-35	간판		1	식			
21	신가리	265-35	동산이전비		1	식			
22	신가리	265-35	간판		1	식			
23	신가리	265-35	동산이전비		1	식			
24	신가리	265-35	비가림		1	식			
25	신가리	265-35	목조데크		1	식			
26	신가리	265-35	간판		1	식			
27	신가리	265-35	동산이전비		1	식			
28	신가리	265-35	비가림시설	12*1.5	1	식	강*자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5-8	
29	신가리	265-58	담장		5	M			삽교농업협동조합
30	신가리	265-59	건물	목조함석지붕단 층점포	138.6	㎡	이*주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	
31	신가리	265-59	건물	목조함석지붕단 층점포	138.6	㎡	신*영	대전특별시 유성구 송림로 13, 104동 601호	
32	신가리	265-59	간판		1	식	삽교농약종묘사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5-60	
33	신가리	265-59	동산이전비		1	식			
34	신가리	283-10 0	건물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근린생활시 설 및 주택	43	㎡	권*자	예산군 삽교읍 두리 283	
35	신가리	283-10 0	건물	내역 근린생활시설	30	㎡			
36	신가리	283-10 0	건물	주택	13.8	㎡			
37	신가리	283-89	건물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52.08	㎡			
38	신가리	283-89	건물	주택 2층	52.08	㎡	한*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83-33	
39	신가리	283-90	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점포	45.5	㎡			
40	신가리	283-90	건물	부속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18.2	㎡			

41	신가리	283-90	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61.9	m <sup>2</sup>			
42	신가리	283-90	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2.7	m <sup>2</sup>	한*석	예산군 삼교읍 *** 283-33	
43	신가리	283-90	함석담장	함석	15	M			
44	신가리	265-90	간판		1	식	박*제	예산군 삼교읍 *** 283-17	
45	신가리	265-90	동산이전비		1	식			
46	신가리	265-90	간판		1	식	박*희	홍성군 광천읍 *** 137	
47	신가리	265-90	동산이전비		1	식			
48	신가리	283-91	건물	목조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점포	21.5	m <sup>2</sup>	정*영	예산군 삼교읍 **** 11, 108동 ****호	
							삼다리신용 협동조합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 71	근저 당
							정*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312, 2105동 ***호	근저 당
49	신가리	283-91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지하	10.53	m <sup>2</sup>	정*영	예산군 삼교읍 **** 11, 108동 ****호	
50	신가리	283-91	건물	1층	101.8 6	m <sup>2</sup>			
51	신가리	283-91	건물	2층	25.74	m <sup>2</sup>			
52	신가리	283-93	건물	블록조 아연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8	m <sup>2</sup>	손*미	예산군 삼교읍 *** 72, ***호	
53	신가리	283-93	건물	1층	8.06	m <sup>2</sup>			
54	신가리	283-93	건물	2층	16	m <sup>2</sup>			
55	신가리	283-93	간판		1	식			
56	신가리	283-93	동산이전비		1	식			
57	신가리	283-87	건물	목조 함석지붕 주택 및 점포 1층	230	m <sup>2</sup>	김*겸	예산군 삼교읍 *** 72 벽산아파트 ****호	
58	신가리	283-87	건물	2층 근린생활시설	66.31	m <sup>2</sup>			
59	신가리	283-87	장독대 및 창고		6	m <sup>2</sup>			
60	신가리	283-87	쪽문		1	식			
61	신가리	283-87	간판		1	식	주*철	예산군 삼교읍 *** 283-87	
62	신가리	283-87	동산이전비		1	식			
63	신가리	283-87	간판		1	식	이*훈	예산군 삼교읍 *** 283-87	
64	신가리	283-87	동산이전비		1	식			
65	신가리	283-94	건물	목조함석지붕단층주택	26.1	m <sup>2</sup>	정*란	예산군 삼교읍 *** 118	
66	신가리	283-94	건물	부속건물 목조함석지붕단층점포	11.9	m <sup>2</sup>			
67	신가리	283-94	동산이전비		1	식	장*희	예산군 삼교읍 *** 283-94	
68	신가리	283-95	건물	조적조 주택	81.34		김*명	예산군 삼교읍 *** 283-25	
69	신가리	283-95	건물	목조 주택	26.4				
70	신가리	283-96	건물	조적조 점포 및 주택	83	m <sup>2</sup>	김*철	예산군 삼교읍 *** 283	
71	신가리	283-96	마당시설		34	m <sup>2</sup>			
72	신가리	283-96	비가림		24	m <sup>2</sup>			
73	신가리	283-96	수도		1	식			
74	신가리	283-96	보일러		1	식			
75	신가리	283-96	도시가스		1	식			
76	신가리	283-96	담장		11	M			
77	신가리	283-96	비가림		1	식			
78	신가리	283-96	간판		1	식			
79	신가리	283-96	동산이전비		1	식	성*길	예산군 삼교읍 ***** 78-14	
80	신가리	283-86	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351.4	m <sup>2</sup>	인*환	예산군 삼교읍 **** 75-1	
81	신가리	283-86	간판		1	식	김*복	예산군 삼교읍 *** 283-86	

82	신가리	283-86	동산이전비		1	식	김*복	예산군 삽교읍 *** 283-86	
83	신가리	283-86	간판		1	식	현*섭	예산군 삽교읍 *** 283-86	
84	신가리	283-86	동산이전비		1	식			
85	신가리	283-86	간판		1	식	김*동	예산군 삽교읍 *** 283-86	
86	신가리	283-86	동산이전비		1	식			
87	신가리	283-86	간판		1	식	최*옥	예산군 삽교읍 *** 283-10	
88	신가리	283-86	동산이전비		1	식			
89	신가리	283-86	창고	5*1.5	7.5	㎡			
90	신가리	283-86	저온저장고		1	식			
91	신가리	283-86	냉동창고		1	식	김*문 예산군	예산군 삽교읍 *** 283-7	근저당
92	신가리	283-85	건물	목조함석지붕단층주택	25.77	㎡			
93	신가리	283-85	건물	목조 함석지붕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08.27	㎡	이*영	예산군 삽교읍 *** 67-1	
94	신가리	283-85	간판		1	식	진*국	예산군 삽교읍 *** 283-7	
95	신가리	283-85	동산이전비		1	식			
96	신가리	283-103	건물	목조 및 경량철골구조 스투트 및 기와 및 판넬지붕 단층 주택및근린생활 시설 1층	31.2	㎡	박*숙	예산군 삽교읍 *** 76	근저당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97	신가리	283-103	건물	1층	30.24	㎡	박*숙	예산군 삽교읍 *** 76	
98	신가리	283-103	건물	1층	23.16	㎡			
99	신가리	283-103	건물	1층	15.12	㎡			
100	신가리	283-103	건물	1층	5.4	㎡			
101	신가리	283-103	간판		1	식	임*	예산군 삽교읍 *** 283-50	
102	신가리	283-103	동산이전비		1	식			
103	신가리	283-103	목조데크		1	식	최*숙	경기도 남양주시 ***** 118-99, ***호	
104	신가리	283-104	건물		110	㎡			
105	신가리	283-104	화장실		4	㎡			
106	신가리	283-104	창고		9	㎡			
107	신가리	283-106	간판		1	식	김*미	예산군 삽교읍 *** 283-106	
108	신가리	283-106	비가림시설		34.5	㎡			
109	신가리	283-97	간판		1	식	신*철	예산군 삽교읍 ** 803-286	
110	신가리	283-97	철제수납시설		1	식			
111	신가리	283-101	건물		31.5	㎡	박*희	예산군 삽교읍 *** 62-1	근저당
							삽다리신용협동조합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71	
112	신가리	290-37	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1	㎡	권*은	예산군 삽교읍 *** 62-1	
113	신가리	290-33	건물	세멘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1.2	㎡			
114	신가리	290-33	건물	부속건물 세멘블록조 스투트지붕 단층창고	211.1	㎡			
115	신가리	290-33	간판		1	식	박*희	예산군 삽교읍 *** 62-1	
116	신가리	290-33	동산이전비		1	식			
117	신가리	290-33	건물	목조 아연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71.8	㎡	최*의	예산군 예산읍 ****144번길 19, 102동 ***호	피보전
							피엘씨대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퍼스트역삼빌딩 5층	
118	신가리	290-33	건물	1층	33.1	㎡	최*의	예산군 예산읍 ****144번길 19, 102동 ***호	
119	신가리	290-33	건물	1층	14	㎡			

120	신가리	289-37	기동	시멘트	1	식	유*인	고창군 무장면 ***** 8-25	
121	신가리	291-7	건물	조립식판넬	22	m²	차*근	예산군 삽교읍 *** 291-2	
122	신가리	291-7	간판		1	식			
123	신가리	291-7	동산이전비		1	식			
124	신가리	291-8	건물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 1층	68.7	m²	현*교	예산군 삽교읍 *** 48-8	
125	신가리	291-8	건물	1층	50.1	m²			
126	신가리	291-8	건물	1층	31.6	m²			
127	신가리	291-8	건물	1층	25.4	m²			
128	신가리	291-8	간판		1	식			
129	신가리	291-8	동산이전비		1	식			
130	신가리	291-8	간판		1	식			
131	신가리	291-8	동산이전비		1	식			
132	신가리	291-8	간판		1	식			
133	신가리	291-8	동산이전비		1	식			
134	신가리	292-1	합석담장		1	식			

예산군 공고 제2023-667호

##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 예 산 군 수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23. 4. 17.(월)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23. 4. 17.(월)

## 공인 등록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사유	비고
공인	민원실-예산읍장인-전용 (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인증기 교체에 따른 등록	등록 (예산읍 민원실)

## 공인 폐기 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사유	비고
공인	민원실-예산읍장인-전용 (종직인)	2.1cm × 2.1cm 한글전서체		인증기 이관에 따른 폐기	폐기 (신례원 출장소)